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 보고서

-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 사업책임 :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임경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강효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임)
-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박정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삭제팀장) 외
8명

Contents

I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 현황 _ 1
1.1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특성 3
1.2	정부 대응 현황 5
1.3	해외 정책 현황 6
II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 _ 13
2.1	추진배경 15
2.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7
2.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19
III	유통실태 모니터링 지표개발 _ 21
3.1	모니터링 지표개발 과정 23
IV	유통실태 모니터링 결과 _ 31
4.1	유통실태 모니터링 주요 결과 33
4.2	플랫폼별 유통실태 40

Contents

	정책적 시사점 _ 53
---	--------------

참고문헌 _ 59

부록 _ 61

‘안전하고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조성’을 위한 온라인 카드뉴스

별책1.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 [시민편]

별책2.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 [경찰편]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1	디지털성범죄 정보(개인 성행위 정보 등) 관련 심의 및 시정 요구 현황	4
표 II-1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18
표 II-2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단 구성	19
표 III-1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현황	23
표 III-2	플랫폼별 신고 및 삭제처리 확인시점	25
표 III-3	피해촬영물 검색키워드(1차)	26
표 III-4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지표: 영상 요소	27
표 III-5	모니터링 지표 적용률	28
표 IV-1	유통실태 모니터링 대상 및 비율	33
표 IV-2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10개	34
표 IV-3	플랫폼별 피해촬영물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35
표 IV-4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vs 공적 공간	36
표 IV-5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내	36
표 IV-6	피해 추정 장소 : 공적 공간	37
표 IV-7	피해 추정 장소 : 기타	37
표 IV-8	피해 추정 장소에 따른 성기 노출 유무	38
표 IV-9	플랫폼별 신고 대비 삭제비율	39
표 IV-10	웹하드 심화 모니터링 전략	41
표 IV-11	웹하드 심화 모니터링 방식	41
표 IV-12	웹하드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10개	42
표 IV-13	웹하드 심층모니터링 : 악성 유통업체 상위 10% 6개사	43
표 IV-14	웹하드 심층 모니터링 과정	44
표 IV-15	포르노사이트 심화 모니터링 과정	46
표 IV-16	포르노사이트의 주요 특성과 심화 모니터링 전략	46
표 IV-17	포르노사이트 모니터링 과정	47
표 IV-18	텀블러 심화 모니터링 과정	49
표 IV-19	텀블러의 주요 특성 및 심화 모니터링 전략	49
표 IV-20	텀블러 모니터링 과정	50

Picture Contents

그림 목차

■ 그림 I-1 ■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 및 비율(2007~2016년)	4
■ 그림 I-2 ■ 디지털성범죄의 유포특성	5
■ 그림 I-3 ■ 일본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이트	8
■ 그림 I-4 ■ 미국의 사이버 시민권 보호 기구(CCRI)	9
■ 그림 I-5 ■ 캐나다의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정책 및 교육 자료	10
■ 그림 I-6 ■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교육 플랫폼: e-safety	12
■ 그림 II-1 ■ 2018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목표 및 과제	18
■ 그림 II-2 ■ 유통실태 모니터링 프로세스	20
■ 그림 III-1 ■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24
■ 그림 III-2 ■ 피해촬영물 판독 프로세스	24
■ 그림 III-3 ■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판독지표	27
■ 그림 III-4 ■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판독지표 세부내용	28
■ 그림 IV-1 ■ 플랫폼별 모니터링 비율	33
■ 그림 IV-2 ■ 플랫폼간 유통실태 . 텀블러를 원본 소스로 하는 경우	40
■ 그림 IV-3 ■ 웹하드 피해촬영물 게시물 수	42
■ 그림 IV-4 ■ 웹하드 피해영상물 업로드 및 유통과정	44
■ 그림 IV-5 ■ 포르노사이트의 유통과정 도식화	47
■ 그림 IV-6 ■ 텀블러의 유통구조	50
■ 그림 V-1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모형(안)	58

I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 현황

- 1.1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특성
- 1.2. 정부 대응 현황
- 1.3. 해외 정책 현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 현황

1.1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특성

- 디지털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9%(대검찰청 범죄통계, 2015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8)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심의 및 시정 요구도 최근 3년 이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해촬영물 유통의 온상이던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¹⁾이 2016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 기술 등의 발전과 더불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를 단순 흥밋거리로 인식하는 왜곡된 성문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성폭력 구도를 넘어서 불특정 가해자와 주로 여성인 피해자의 구도 속에서 여성을 상품화함과 동시에, ‘웹하드 카르텔’ 구조 등²⁾과 같은 산업화된 구조 안에서 강화되고 있음.

1)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로 시작하여 성인 콘텐츠를 유통하다가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맞물려 급성장하며 2003년 불법 성인사이트로 확대 개편한 후 회원 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가 됨.

2) ‘웹하드 카르텔’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플랫폼인 웹하드 업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공유로 이익을 거두면서, 피해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거나 직원이 헤비업로더로 활동하고, 피해자에게 의뢰받아 유료로 피해촬영물 삭제를 하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산업 구조를 의미함

■ 그림 I-1 ■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 및 비율(2007~2016년)

(단위: 건수, %)



자료: 대검찰청(2017) 범죄통계³⁾

■ 표 I-1 ■ 디지털성범죄 정보(개인 성행위 정보 등) 관련 심의 및 시정 요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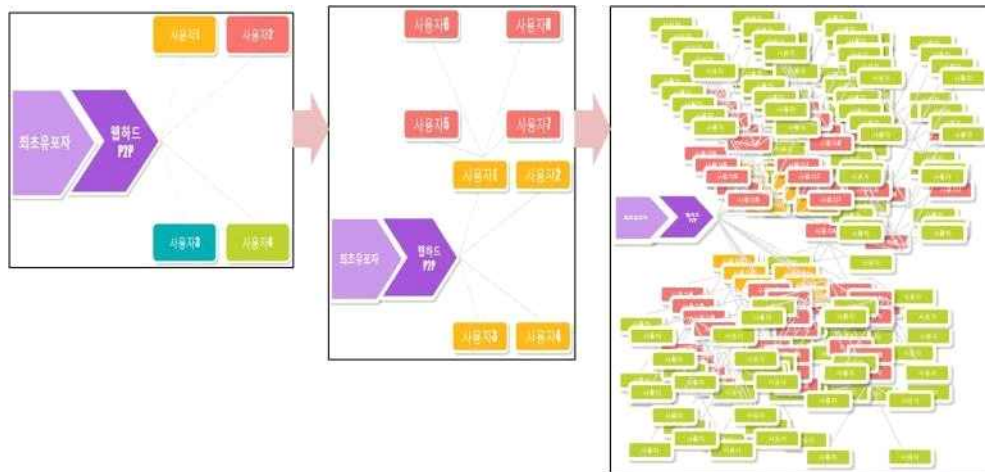
구분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접속차단
2015년	3,768	3,636	63	3,573
2016년	7,356	7,325	10	7,315
2017년(~6.12.)	2,977	2,977	1	2,976
2018년(~10.31.)	14,385	14,289	123	14,166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현황(2015~2018.10.31.기준)

-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폭력과 달리 피해자가 인지하기 전에 피해촬영물이 사이버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된다는 특징이 있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는 다수의 플랫폼 사용자를 통해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상이 확산된 경우가 대부분임. 디지털성범죄의 유포 특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3) 발생건수란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한 사건 수이다. (대검찰청, 2017 범죄통계).

【그림 I-2】 디지털성범죄의 유포특성



-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고 절차 및 지원 체계를 잘 알고 있지 않거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2차 피해·재유포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1.2. 정부 대응 현황

- ‘소라넷’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며, 촬영·유포에 대한 처벌강화·피해자 지원 강화·가해자 구상권 청구 등 폭넓은 정책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여성가족부, 2018.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수사 전담팀 구성(2018.1),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개정(2018.9.13)⁴⁾,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넓히고 처

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 시행(2018.12.18)⁵⁾,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 등이며,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적 영역 안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와 사회적 지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1.3. 해외 정책 현황

- 디지털성범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피해가 한 국가의 사법권 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임. 피해촬영물은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순간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유통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이거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음. 국경이 없는 범죄의 특성상 각국의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대응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률안 마련 및 신고 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요 입법현황과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봄.

a. 일본

- 2013년 결별 후 스토킹을 반복하던 가해자가 여성을 살해한 직후 교제 시 촬영한 동영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미타카 스토킨 살인 사건’은 일본 사회 각계에 리벤지 포르노⁶⁾에 대한 경종을 울렸음. 일본 정부는 2014년 11월 ‘사생활 성적 촬영 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리벤지포르노 방지법)’⁷⁾을 제정함. 동 법에 근거하여 동의 없이 찍은 성적 촬영물,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성적 촬영물, 협박에 의해 동의한 성적 촬영물 등의 유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29호, 2018.9.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복제 영상,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 등이 피해촬영물 범위에 포함되었고, 처벌이 강화됨.

6) ‘리벤지포르노’라는 용어는 가해자 입장을 반영하고 피해촬영물을 포르노화 하는 용어로서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함.

7) 일본 대다수의 언론, 관련 서적, 논문 등에서 본 법률을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으로 약칭하고 있음.

포에 대해 제 3조 1항 공표죄(公表罪) 및 2항 공표목적제공죄(公表目的提供罪)로 처벌할 수 있게 됨.⁸⁾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법 특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피해자 및 유가족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시, 기존 정보 송신자의 동의를 7일간 기다린 후 삭제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함(平沢勝榮 등 2016; 윤상민, 2017).⁹⁾

- 경찰청은 종합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여, 법령소개, 예방 및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상담 창구(상담 전용 전화#9110, 소년 상담 창구, 사이버범죄 상담 창구,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전국 경찰서 및 경찰본부내 리벤지포르노 피해 고소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平沢勝榮 등 2016).
- 현재 경찰 외에 기존 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피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법무부(모두의 인권 110, 여성인권핫라인, 인터넷 인권 상담 접수 창구), 일본 사법지원센터(범죄피해지원창구)임. 일본 정부는 국내의 1366과 같은 핫라인을 개설하여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모든 관련 기존 상담 창구에서 피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담 창구의 문턱을 낮추는 전략임. 향후 지자체 범죄피해자 상담 창구, 지방 법무국 인권 상담 창구, 교육 기관, 부인상담소, 남녀공동참여센터,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및 관련 민간 상담소로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야후 재팬 등 17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악용 방지를 목표로 설립한 사단법인 세이프 인터넷 협회는 피해자 지원 플랫폼 ‘세이프라인’을 운영함. 세이프라인은 피해촬영물

8) ① 공표죄 : 촬영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및 공공연히 진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함. ② 공표목적제공죄 : 공표를 목적으로 특정 소수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함.

9) 일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정보 송신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삭제 및 송신 방지 조치를 할 경우 송신자는 해당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의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송신자에게 송신 중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7일간 회신이 없을 시 삭제 및 송신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음.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은 정보 송신자의 동의를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당사자에서 유가족까지로 확장하였음.

삭제 외에도 상담 연계¹⁰⁾, 경찰 신고 안내를 지원하고 있음.

■ 그림 I-3 ■ 일본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이트

경찰청 종합 정보 사이트 http://www.npa.go.jp/safetylife/seianki/shisei-gazouboushi/	세이프라인 https://www.safe-line.jp/

b. 미국

- 미국은 2004년 영상물 관음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을 통해 불법촬영을 규제하고 있음¹¹⁾. 동 법에 따르면, 개인이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사적 이미지를 캡처 혹은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함.¹²⁾
- 비동의 성적 영상물 관련 법(‘리벤지포르노’법)은 4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의 회법 혹은 형법에 의해, 경범죄(초범), 중범죄(재범)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음. 워싱턴D.C의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피해자 기준을 확대하여 트랜스젠더의 이미지 등을 포함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고, 비동의 영상물을 5명 미만

10) 도쿄 거주, 재직, 통학 중인 사람은 도쿄여성플라자로 연계하고 있음. 그 외 지역은 법무부 상담 창구를 소개.

11) 2015년 여성의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하는 웹사이트를 이중으로 운영해 온 캐빈 볼러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음. 캐빈 볼러트는 2012년 1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당신은 게시되었음(Ugotposted.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비동의 영상물 및 이미지 11,000여장을 올리고 피해 여성의 실명과 페이스북 계정을 연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삭제해주는 ‘나의 평판 바꾸기(ChangeMyReputation.com)’라는 두 번째 웹사이트를 만들어 약 3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음. 이 사건은 미국 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었음.

12) 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Chapter 88-privacy Sec. 1801. Video Voyeurism.

(disclose), 6명 이상에게 공유한 경우(publish) 등에 대해 다른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대상이 되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성적 관심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가슴 등에 한정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다리·가슴부위를 촬영하는 “Upskirting”, “Downblousing”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논의 중에 있음(김현아, 2016; 배상균, 2016; www.cybercivilrights.or.kr)

- 본인이 ‘리벤지포르노’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홀리 제이콥(Holly Jacob)이 만든 미국의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이하, CCRI)는 2012년 8월부터 피해자 직접 지원 서비스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수집하는 ‘End Revenge Porn’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고 있음.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주 7일 핫라인 ‘Speak up’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용 질문지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피해 상황을 기록하여 공유하고 수사·법률지원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그림 I-4 ■ 미국의 사이버 시민권 보호 기구(CCRI)



©www.cybercivilrights.org

c. 캐나다

- 2000년대 이후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와 이에 대한 촬영물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해오고 있음¹³⁾. 캐나다는 형법 제5장(성범죄, 공중도덕과 치안

13) 2017년 CCCP는 컴퓨터 추적시스템을 통해 아동 성학대 인터넷 게시물의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거하고 호스팅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아라크니드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2억 3천만 웹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아동 음란물을 호스팅한 웹페이지 510만건, 아동 성학대 자료 4만건을 발견하였다. https://www.protectchildren.ca/en/press-and-media/news-releases/2017/csam_global_fight

문란행위) 62조(관음,Voyeurism)에서 불법촬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제1항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몰래 관찰하거나 또는 타인을 몰래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제4항에서는 1항에 의거하여 범죄가 되는 행위로 얻은 기록임을 알면서 인쇄, 복제, 간행, 배포, 유통, 판매, 광고 또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⁴⁾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신고절차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나토바주의 경우, 거주민들의 아동 포르노 신고를 의무화(2009.4)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를 제작·배포·소유·접근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4년 캐나다 정부는 『인터넷상의 아동 성적 착취 예방을 위한 정책』(National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 the Internet, NSPCSEI)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고 비영리 기구로 활동해 온 캐나다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이하 CCCP)를 정책추진기구로 발표하였으며, 웹사이트(www.Cybertip.ca)를 열고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신고 절차, 범위, 내용 등을 교육·홍보하고 캐나다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림 I -5 ■ 캐나다의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정책 및 교육 자료



인터넷 플랫폼 회사의 정보 삭제 정책 안내
©www.needhelpnow.ca



온라인 성학대 대처를 위한 가족용 가이드북
©www.cybertip.ca

14) Justice Canada, Voyeurism as a Criminal Offence : A Consultation Paper, 2002

d. 호주

- 2017년 로얄멜번공대가 호주에 거주하는 16~49세 4,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비동의 성적 영상물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으며, 11%는 본인의 이미지가 배포된 경험이 있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는 16-29세의 젊은 층이지만, 장애인과 원주민의 피해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 호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미지 소유·배포·유포행위는 7개 주(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노던준주, 퀸스랜드주, 남호주주, 빅토리아주, 테즈메이니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형법으로 처벌됨. 리벤지포르노는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처벌되며,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하고, 협박행위 등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피해영상에 대한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추가 2년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주가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그루밍(길들이기), 아동 성적 착취, 스토킹, 괴롭힘 혹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2006년부터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호주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이미지기반학대(Image Based Abuse, IBA)로 정의하고, 2015년 온라인위원회(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하고 ‘리벤지포르노’를 포함하여 온라인 안전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지원을 하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였음.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교육 콘텐츠 플랫폼인 E-safety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고 및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청소년, 부모, 보호자, 교육자를 위한 교육 자료 및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15) 호주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연령, 인종, 종교, 젠더, 성적 지향, 교육 수준, 소득에 관계없는 이미지에 기반을 둔 학대피해로 보고, 비동의 성적영상촬영 및 유포행위를 ‘이미지 기반 학대(Image based Abuse, IBA)’로 정의하고 있다(Henry et al, 2017).

■ 그림 1-6 ■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교육 플랫폼: e-safety



호주인 5명 중 1명은 리벤지포르노의 피해 경험에 노출되어있다. ©www.esafety.gov.au

II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

2.1. 추진배경

2.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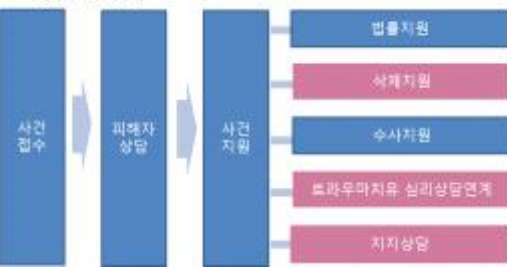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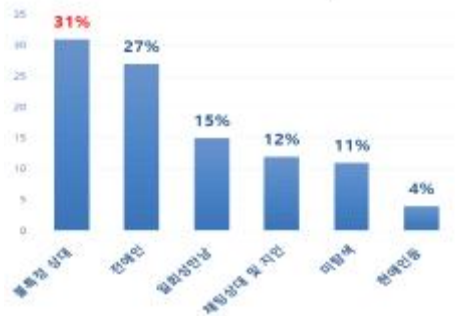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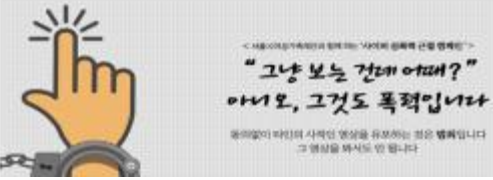
II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

2.1. 추진배경

- 서울시와 본 재단은 2017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자 직접 지원(피해촬영물 삭제 및 심리 치료 지원) 및 피해 통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음. 서울시와 본 재단이 마련한 피해자를 위한 공적 구조 내의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체계는 2018년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국 확대 실시되고 있음.
- 2017년 시범사업이 남긴 과제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최초로 피해촬영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피해 특성 및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2017년 시범사업 추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2017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주요 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구축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설계 구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이버활동단, 반성폭력활동 전문가로 사업단 구성 	• 피해자지원 절차구축  • 지원프로세스 설계과정 
피해촬영물 삭제 및 통계 구축	• 시범사업 통계 및 삭제 - 기간 : 2017.10~12 - 상담인원 : 81명 - 상담 및 영상삭제 : 57명 - 트라우마 집중심리치료,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비동의 촬영영상물 유괴자  피해자-가해자관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 본 사업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2018.4~)개설 및 전국사업으로 확대	

- 시범 사업의 시사점을 통해 2018년 필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첫째, 피해자 개인 지원을 넘어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요구됨. 2017년 서울시 시범사업 및 여성가족부가 확대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는 ‘신고된 피해촬영물 삭제’에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음. 디지털성범죄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촬영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이 있음. 이는 암수 범죄가 방조되는 것이므로, 신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촬영물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피해촬영물 현황 파악 및 유통 구조 파악을 위한 유통플랫폼 모니터링이 필요함.
 - 둘째,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지원은 공적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다른 성폭력사건 대응과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빠른 차단과 조치가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함. 공적 구조가 확대됨과 더불어 피해자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예방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
 - 셋째, 2차피해·재유포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입장의 수사지원’이 요구됨. 수사과정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관등의 이해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예방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함. 따라서 경찰수사관의 피해자 입장에서의 수사지원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됨.

2.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2.1 사업목적

- 피해촬영물의 주요 유통 플랫폼(포르노사이트, 웹하드, 소셜네트워킹사이트 등)를 모니터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유통실태를 파악함.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및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피해자·잠재적 피해자·조력자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 경찰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 피해(자)의 특성 및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를 개인적이고 사후적으로 지원하던 체계에서 사전적이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에 해당함.

【그림 II-1】 2018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목표 및 과제



2.2.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8.2.~12.31
- 사업예산 : 50,000천원
- 사업내용

【표 II-1】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유통모니터링	1. 피해촬영물 유통 플랫폼 조사 2.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지표 개발 3. 유통플랫폼별 피해영상물 유포 특성 분석 4.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유통 실태 공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1.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시민편]』 제작 2.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제작

2.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3.1 추진체계 -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단 구성

- 2017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피해촬영물 유통플랫폼 모니터링단,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가단을 구성하였음.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단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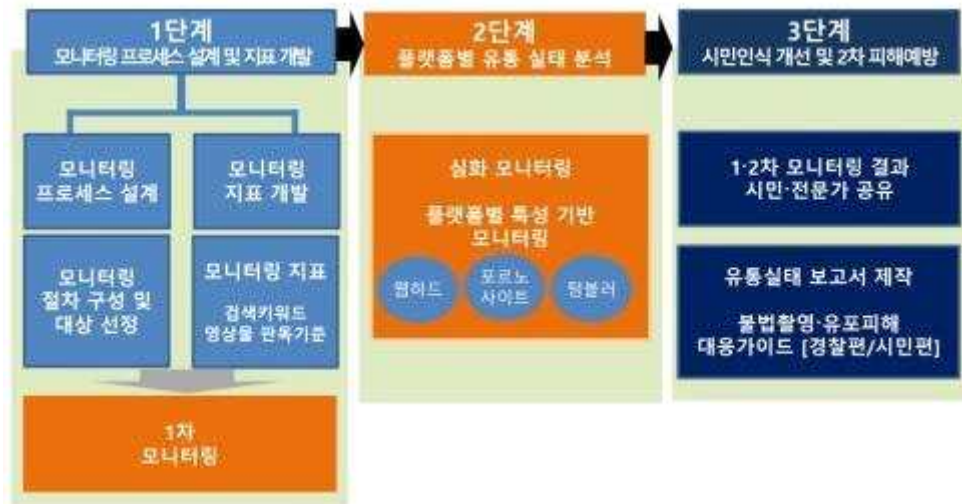
표 II-2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단 구성

참 여	구성	역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담당TF (총 3인)	· 사업총괄 · 유통실태 및 관련 통계 구조화 및 활용 방안 기획 · 매뉴얼 2종 공동 기획 및 집필 · 유통실태보고서 기획 및 집필
피해촬영물 유통플랫폼 모니터링단	· 사이버성폭력 피해 상담 및 피해촬영물 삭제업무 유경험자 (총 8인)	· 피해촬영물 발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수행 · 유통실태 파악 및 관련 통계 구축 · 유통실태보고서 공동집필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가단	· (사이버)성폭력상담활동가, 사이버수사대 등 전담경찰, 사이버성폭력 관련 연구자 및 법학자 등 (총 15인)	· 각 분야 전문성에 기반한 세부 사업별 자문, 교육 및 협력 · 매뉴얼 2종 공동 기획 및 집필

2.3.2 추진전략① - 3단계 프로젝트 추진 단계 설계

- 유통실태 모니터링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3단계 프로젝트 추진 단계를 설계함. 1단계는 모니터링 프로세스 설계 및 지표 개발이며, 2단계는 플랫폼별 유통실태 분석, 3단계는 시민인식 개선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단계로 추진함.

■ 그림 II-2 ■ 유통실태 모니터링 프로세스



III

유통실태 모니터링 지표개발

3.1 모니터링 지표개발 과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유통실태 모니터링 지표개발

3.1 모니터링 지표개발 과정

3.1.1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선정

- 2017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결과 피해촬영물이 주요하게 유통되고 있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및 텀블러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으로 설정함.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현황은 다음과 같음.

Ⅲ 표 III-1 Ⅲ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현황

플랫폼 종류	모니터링 대상	선정 근거
웹하드	총 48개 사이트 (201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업체 중 10월30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	- 2017년 서울시 사이버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수행결과, 포르노사이트(42%), 웹하드(10%), SNS(30%)의 불법촬영·유포피해 영상이 발견되었음. - 사업결과를 토대로, 불법촬영·유포피해 영상 유통 현장을 모니터링함.
포르노사이트	약 166개 사이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 모니터링 결과)	
SNS	텀블러 (국내법 미적용대상. SNS 중 피해촬영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	
총 합계	214개 사이트 및 1개의 SNS 대상	

3.1.2.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설계

- 본 사업단은 2017년 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지되지 않은 피해촬영물들 다수 발견해왔음. 이에, 암수 범죄 사전 대응 차원에서 피해촬영물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발굴하고 신고해왔음. 이를 통해 2018년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구축함.

Ⅲ-1 Ⅲ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



- 본 사업의 모니터링단은 피해촬영물 발견부터 삭제 결과 확인까지의 각 세부 과정을 정교화하여 향후 공적 영역에서 확대를 위한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계함.

Ⅲ-2 Ⅲ 피해촬영물 판독 프로세스





① 키워드 검색

-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에 검색 키워드로 선정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을 실시함.
- 검색 결과 게시물 제목 중에서 ‘서양’, ‘일본’이 포함된 게시물은 해외 제작형 음란물에 대한 게시물로 간주하고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제외되지 않은 게시물을 클릭하여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② 영상물 판독

- 영상을 1회 이상 보면서 모니터링단이 사전에 피해촬영물 판독 기준으로 선정한 영상 요소들을 분석함.
- 모니터링 대상 영상에 피해촬영물 기준이 2개 이상 적용되면 2명 이상의 모니터링단이 판정 회의를 실시하여, 피해촬영물 여부를 판단함(적용되는 피해촬영물 기준이 2개 미만이거나, 판정 회의에서 피해촬영물 여부가 애매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영상은 모니터링을 중단함).

③ 삭제 신고

- 피해촬영물을 플랫폼별 신고 창구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후 삭제여부를 확인함.

표 III-2 플랫폼별 신고 및 삭제처리 확인시점

플랫폼	신고창구	삭제여부 확인시점	확인시점 근거
웹하드	운영자	24시간 후	운영자 평균 응답시간
포르노사이트	운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소요시간(3~7일)
텀블러 ¹⁶⁾	운영자	7일	운영자 평균 응답시간

16) 텀블러는 한국 사업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본사로 신고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만 신분증 첨부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방침이 있음. 다시 말해, 텀블러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위임받지 않으면 피해촬영물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임. 모니터링단은 영상 속 피해자의 나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촬영물로 신고를 하였음.

④ 지표추출

-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지표개발을 위한 키워드 및 영상요소 추출을 실시함.

⑤ 삭제결과 모니터링

- 웹하드 및 텀블러 운영자에게 삭제요청 및 삭제결과 모니터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 포르노사이트 신고 및 해당 게시물 삭제신고

3.2. 모니터링 지표

3.2.1. 모니터링 지표 사전 선정

- 2017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대상 피해촬영물 및 해당 게시물 제목에서 모니터링 지표를 추출함.

① 1차 지표 - 검색 키워드

- 피해촬영물 게시물 제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키워드(1차)와 명백한 범죄 행위 관련 단어를 키워드를 추가함.

표 III-3 피해촬영물 검색키워드(1차)

국산	한국인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피해촬영물이 대부분임
국노	한국인이 등장하는 동영상 중 모자이크가 없음을 강조
국노, 국no	‘국노’가 차단되었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
전여친, 여친, 전애인, 애인	연인 관계에서 촬영하고 동의 없이 유포한 성적 촬영물
콜뱅이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는 영상
몰래, 몰카	불법촬영 영상임을 암시
유출	비동의 유포 영상임을 암시
강간	성폭력 현장을 촬영했음을 암시
고딩, 고등어, 중딩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암시

② 2차 지표 - 영상 요소

- 피해촬영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상 특징을 추출하여, 피해촬영물 판독 기준으로 설정함.

표 III-4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지표: 영상 요소

촬영 구도	연출된 카메라워크 없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면 설치형 불법촬영의 가능성이 높음 연출된 카메라워크로 보기 어렵게 카메라가 초점 없이 계속 흔들리는 경우 이동형 불법촬영의 가능성이 높음
화질	제작물로 볼 수 없는 조악한 화질
성기 노출 여부	국내 제작물은 성기 노출이 불가함
크레딧 유무	제작물을 크레딧을 명시함

3.2.2. 모니터링 지표 최종 확정

- 앞선 모니터링 지표(안)을 피해촬영물에 모니터링 최종 지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함.
- 1차 지표 : 영상물 키워드 지표로, 한국야동·불법행위·피해장소·대상자 등으로 지표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함.
- 2차 지표 : 앞선 4개의 영상 요소 외에 연령표시 제한 유무, 상이한 영상 합본 여부를 포함하여 최종 지표를 6개로 확정함.
-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판독을 위한 최종 지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III-3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판독지표



- 1차 지표와 2차 지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그림 III-4 ■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관독지표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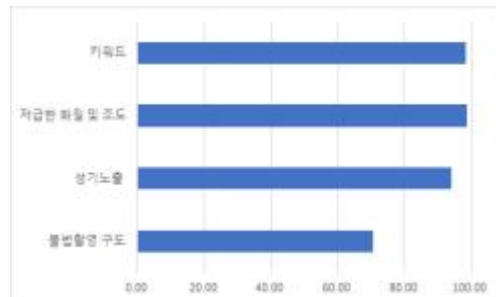
1차 지표 : 명백한 불법행위(불카, 미성년자 등) 외에도 불법촬영물임을 암시 1)행위 2)피해장소 3) 피해대상 4)한국어 등 동영상 등의 용어 등장		2차 지표 : 영상물 관독 기준 (1-6)에 2건 이상 중복 해당 경우, 불법촬영물 가능성 높음	
분류	검색 키워드 (약 32개)	1) 촬영구도	고정형/이동형 불법촬영 구도 카메라 움직임
한국어 등(지역 특정)	코리아no 한국	2) 카메라 화질	제작물로 볼 수 없는 조악한 화질
불법 행위	도촬, 직좌프, 암스(암스커브의 줄임말, 치대 속을 찍은 촬영물), 초대남(강간을 임에 하도록 초대하는 남자, 사용자-00을 올 초대남 구합니다), 고딩에(고등학생 암시)	3) 성기노출 유무	제작물은 성기노출 없음
피해장소	화장실, 모텔, 자취방, 모텔방, 노래방, 클럽	4) 크레딧 유무	제작물은 반드시 크레딧이 있음
대상자	여대생, 여동생, 동료, 교복(대성녀자 암시), 여직원, 니이트녀, 카탈, 율령녀(성 대매의 한 종류), 자취녀, 갈래, 골강(성대매의 한 종류), 대학생, 조건녀(성대매 의 한 종류), 누나, 일반인	5) 연령표시 제한 유무	연령표시를 안 두는 경우, 불법촬영물가능성 높음
행위	일체사정을 여성 밑에 하는 행위, 자위, 피하고	6) 상이한 영상 합본 여부	서로 다른 영상을 합쳐서 조악하게 편집하는 경 우 피해 촬영물일 가능성이 있음
기타	동영상		

3.4 모니터링 지표의 의미

- 키워드를 비롯한 주요 피해촬영물 지표의 적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 423건의 피해촬영물에 대해 키워드, 저급한 화질 및 조도, 성기 노출, 불법촬영구도의 순으로 지표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각각의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음.

■ 표 III-5 ■ 모니터링 지표 적용률

구분	건수	적용비율
불법촬영 구도	298	70.45%
성기 노출	398	94.09%
저급한 화질 및 조도	417	98.58%
키워드	416	98.35%
평균 적용비율		90.37%



- 이는 지표가 우선 발견되는 게시물들이 피해촬영물로 확인되는 증거이며 향후 피해촬영물 발견 시 본 고가 제시하는 각 지표들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플랫폼 관리자의 자체 모니터링 및 공권력의 점검 등에서 신고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을 발굴 및 일제 조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IV

유통실태 모니터링 결과

4.1. 유통실태 모니터링 주요 결과

4.2 플랫폼별 유통실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유통실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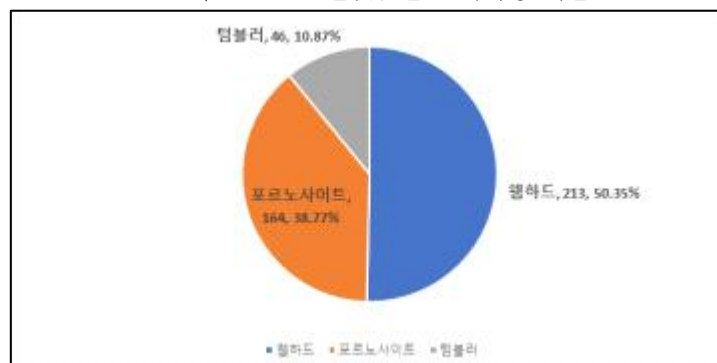
4.1. 유통실태 모니터링 주요 결과

- 유통실태 모니터링 기간은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임.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웹하드, 포르노사이트, 텀블러이며 각각의 모니터링 비율은 다음과 같음. 웹하드는 전체의 50.35%(213건)이며, 포르노사이트 38.77%(164건), 텀블러 10.87%(46건)임.

표 IV-1 유통실태 모니터링 대상 및 비율

구분	모니터링 건수	모니터링 비율
웹하드	213	50.35%
포르노사이트	164	38.77%
텀블러	46	10.87%
총계	423	100.0%

그림 IV-1 플랫폼별 모니터링 비율



4.1.1. 키워드 분석

- 모니터링대상이 되는 전체 423건의 피해촬영물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도출된 키워드는 ‘한국야동’, ‘국내야동’, ‘국노’, ‘국산야동’, ‘야동’, ‘도촬’순으로 나타남. 도출된 키워드 총 60개 중 상위 10위에 도출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표 IV-2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10개

순위	키워드	빈도
1	한국야동	16.58
2	국내야동	7.49
3	국노	6.95
4	국산야동	5.35
5	야동	5.35
6	도촬	3.21
7	원정녀	3.21
8	자취방	3.21
9	화장실	3.21
10	안마방	3.21

* 빈도: 전체 60개의 키워드를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

- 플랫폼별로 피해촬영물 상위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약간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먼저 웹하드는 중노, 국노, 몰래, 얼굴, 와꾸¹⁷⁾(얼굴을 뜻하는 비속어) 순으로 도출되었음. 포르노사이트는 여친, 한국, 몰카, 와이프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텀블리는 유출, 몰카, 고딩, 엔조이, 판매합니다, 교환 순으로 도출되었음.
- 키워드 분석 결과는 모두 공통적으로 ‘국산포르노’ 등으로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도출되었지만, 각각 플랫폼별로 상이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웹하드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불법촬영물임을 암시하는 키

17) ‘와꾸’는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여성의 외모 수준을 폄평하는 은어로 사용되었음. 사이버공간에서 여성들의 외모 수준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

위드가 주요하게 도출된 반면, 포르노사이트는 보다 불법촬영물임이 분명한 표현이 주요하게 사용되었으며, 텀블러는 판매, 교환 등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3 플랫폼별 피해촬영물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4.1.2. 피해 추정 장소

- 전체 423건의 피해촬영물에 대한 피해 추정 장소에 대한 통계는 일차적으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2차적으로 사적 공간 내에서 집과 이외 장소(숙박업소 등)와 공적 공간(공중화장실, 길거리 등), 기타장소로 구분하였음.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피해 추정 장소는 다음과 같음.

1) 피해 추정 장소의 비율

- 피해영상물에 나타난 피해 추정 장소를 일차적으로 구분한 결과, 사적 공간이 81.8%로 높게 나타남. 공적 공간의 비율은 8.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표 IV-4 ■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vs 공적 공간

구분	건수	비율
사적 공간	346	81.80
공적 공간	36	8.51
기타	20	4.73
알 수 없음	21	4.96
합계	423	100



2)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내

- 사적 공간 내 피해 추정 장소를 구분한 결과, 숙박업소의 비율(52.02%)이 개인 공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IV-5 ■ 피해 추정 장소 : 사적 공간 내

구분	건수	비율
집	166	47.98
숙박업소	180	52.02
합계	346	100



3) 피해 추정 장소 : 공적 공간

-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공적 공간 내 피해추정 장소를 살펴 본 결과, 공중화장실(47%)과 실외공간(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외공간은 주로 길거리 등 공공장소로 추정되며 이 외에도 학교, 도서관, 지하철 등에서 주로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

표 IV-6 피해 추정 장소 : 공적 공간

구분	건수	비율
공중화장실	18	47.37
길거리 등 공공장소	16	42.11
학교	2	5.26
도서관	1	2.63
지하철	1	2.63
합계	38	100



4) 피해 추정 장소 : 기타

- 사적 공간 및 공적 공간 외에도 기타 피해 추정 장소를 살펴 본 결과, 자동차 안(33%), 노래방(28%), 성매매업소(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불법촬영에 대한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외에도 개인 사업장, 노래방, 안마방 등의 상업시설에서도 불법촬영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7 피해 추정 장소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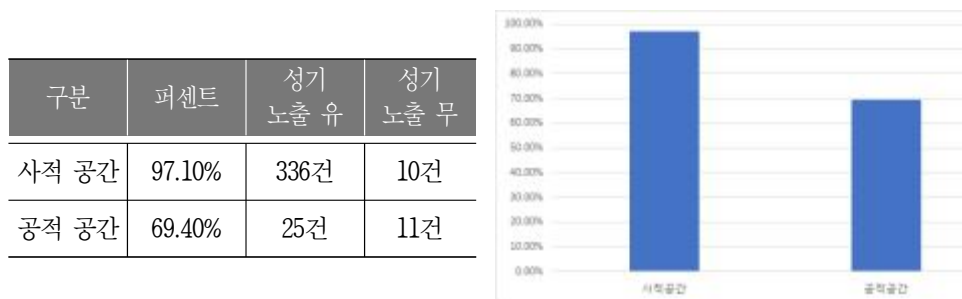
구분	건수	비율
개인사업장 ¹⁸⁾	1	5.56
노래방	5	27.78
안마방	1	5.56
자동차 안	6	33.33
성매매업소	4	22.22
기타장소 합성편집	1	5.56
합계	18	100



5) 피해 추정 장소에 따른 피해촬영물 성기 노출 비율

- 본 모니터링과정에서는 피해 추정 장소에 따른 피해촬영물의 성기 노출 비율을 살펴보았음. 피해촬영물 내 성기 노출 비율이 중요한 것은, 성기 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임.¹⁹⁾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로 판정될 경우, 유포자는 처벌대상이 됨. 반대로 성기 노출이 안 된 영상물인 경우, 삭제지원 및 가해자 처벌에 있어 한계가 있음.
- 피해추정 장소별 성기 노출 유무를 살펴 본 결과, 공적 공간의 경우 69.40% 정도의 영상물에서 성기 노출이 되고 있으나, 피해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31.6%에서는 성기 노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피해영상물에 속하게 됨. 이러한 결과는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포괄되는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영상물을 음란물 기준으로 협소하게 판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함.

표 IV-8 피해 추정 장소에 따른 성기 노출 유무



18) 구체적인 업종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영업 중인 공간으로 보이는 곳들

19)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의 재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한 부호와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하는데, 여기서 ‘음란한 영상’은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을 의미함.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의 유포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피해 영상물의 음란물 판정유무는 현재까지는 처벌근거가 되고 있음.

4.1.3. 게시물 신고 대비 삭제현황

- 전체 423건의 피해촬영물에 대한 각 플랫폼별 신고 대비 삭제 결과값을 살펴보면 웹하드의 삭제비율은 전체의 97.65%로 삭제요청 이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삭제처리가 진행됨. 그러나 피해촬영물의 제목을 변형해서 다음날 다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웹하드 관리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음.
- 포르노사이트는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므로, 유해 사이트 신고 및 게시물 삭제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함. 본 사업의 모니터링단이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 결과, 음란물 여부 심의 절차 과정에서 최소 3~7일이 소요되었으며, 삭제 진행율은 9.15%에 불과하였음.
- 텀블러는 삭제율은 4.35%로 세 플랫폼 중 가장 낮았으며, 특히 텀블러는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삭제요청 및 삭제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기가 어려웠음.

표 IV-9 플랫폼별 신고 대비 삭제비율

구분	웹하드	포르노사이트	텀블러
삭제 비율	97.65%	9.15%	4.35%
신고 건수	213	164	46
삭제건수	208	15	2
미삭제건수	5	149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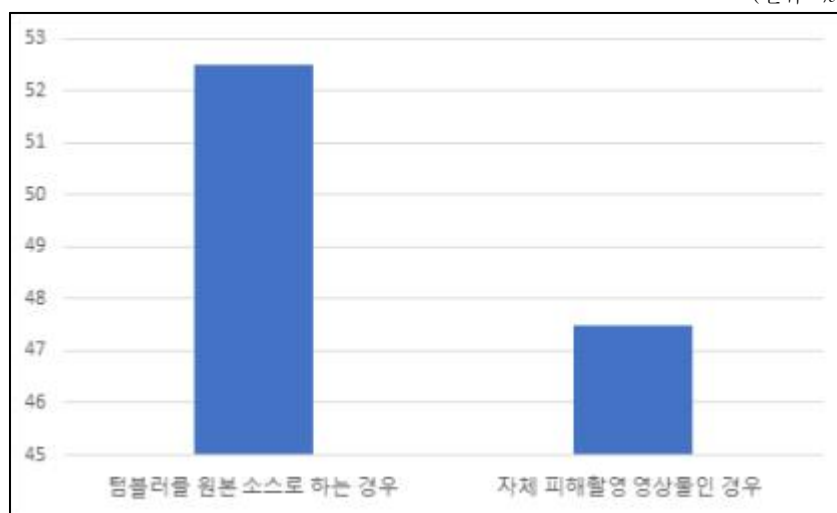
4.1.4. 플랫폼간 피해촬영물 유통실태 : 텀블러와 포르노사이트간 유통

- 심화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텀블러의 피해촬영물을 원본으로 하는 포르노사이트 내 게시물이 발견되었음. 플랫폼간 연계 유통이 의심되는 포르노사이트의 피해촬영물 40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5%가 텀블러를 원본 소스로 하고 있었음.

구분	게시물 수	비율
텀블러를원본소스로하는경우	21건	52.5%
자체피해촬영영상물인경우	19건	47.5%

(2018.11.22.~29 / 2차 모니터링한 포르노사이트 게시물 대상 조사결과)

■ 그림 IV-2 ■ 플랫폼간 유통실태 . 텀블러를 원본 소스로 하는 경우
(단위: %)



4.2 플랫폼별 유통실태

4.2.1 웹하드

① 웹하드 모니터링 개요

- 2018년 8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웹하드는 총 48개사가 운영 중임. 웹하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유통의 온상으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2018년 7월 28일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방영 이후,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²⁰⁾,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100일 집중 단속을 실시함.²¹⁾

- 본 사업에서는 48개 웹하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 게시물 수가 많은 상위 10%의 업체에 대해 심화 모니터링을 진행함. 심화 모니터링은 상위 10%의 업체의 게시물에 나타난 피해촬영물을 신고하고 분석하였으며, 웹하드의 특성과 업로드, 다운로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음.

표 IV-10 웹하드 심화 모니터링 전략

웹하드 주요 특성	심화 모니터링 전략
신고시 삭제 대응은 빠르지만(24시간 이내) 기술적으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촬영물 유통 자체를 차단하고 있지 않음.	▶ 웹하드 전체 피해촬영물 유통 현황 파악 (전수조사)후 유통 규모 상위 업체 집중 실태 파악

표 IV-11 웹하드 심화 모니터링 방식

전수조사	대상 : 48개 웹하드 ²²⁾ 방식 : 키워드 ²³⁾ 검색 실시 → 피해촬영물 추정 제목 게시물 수 파악
↓	
악성 업체 타겟 모니터링	대상 : 게시물 수 상위 10% 업체 방식 : ① 피해촬영물 신고·분석 ② 사이트 및 헤비업로더 실태 파악

IV

② 전수조사 결과

- 웹하드 전수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되었으며, 1차 모니터링 결과 피해촬영물 제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10개 키

20) 청원 기간(2018.7.29.~8.28) 동안 208,543명이 참여함.

21)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및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2018년 8월 13일부터 100일간 52개 웹하드 업체 및 포르노 사이트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함. 무려 3,600여 명이 불법촬영·음란물 유통 사범 등으로 검거되었고, 그 중 웹하드 운영자 22명, 헤비 업로더 240명이 검거됐음.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8월 등록 업체 리스트 중 10월 30일 기준 사이트가 운영중인 업체.

23) 1차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10개 활용 : 국노], 국산], 군노], 국no], 강간, 몰래, 몰카, 유출, 도촬, 조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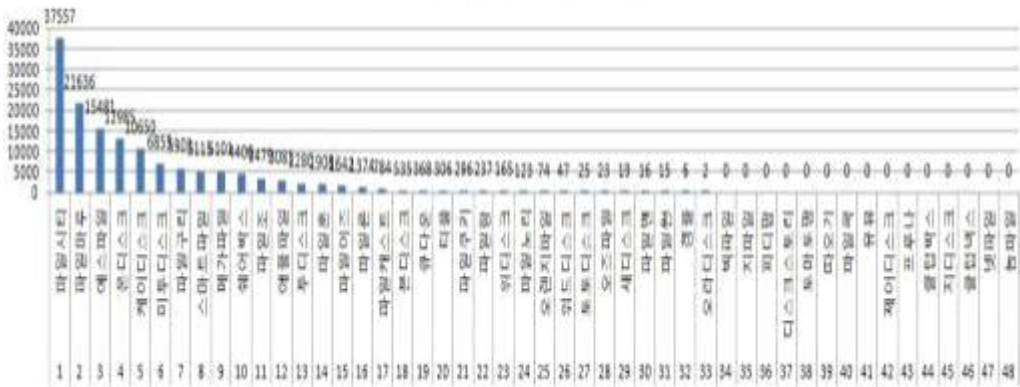
워드 검색하여 피해촬영물 추정 게시물 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상위 10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표 IV-12 웹하드 피해촬영물에 나타난 키워드 상위 10개

순위	키워드
1	국노
2	국산
3	군노
4	국no
5	강간
6	몰래
7	몰카
8	유출
9	도촬
10	조건녀

전수조사 결과, 웹하드별 피해촬영물 추정 게시물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IV-3 웹하드 피해촬영물 게시물 수



2018.10.30.~11.6, (전수조사 결과)

-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추출한 상위 10%의 악성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음. 피해 촬영추정 게시물 1만 건 이상 검색된 5개사(파일시티, 파일마루, 예스파일, 온디스크, 케이디스크)와 전수조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게시글의 수가 적었으나 1차 모니터링 기간 중 피해촬영물이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었던 미투디스크를 포함하였음²⁴⁾.

■ 표 IV-13 ■ 웹하드 심층모니터링 : 악성 유통업체 상위 10% 6개사

순위	유통업체	비고
1	파일시티	피해촬영 추정 게시물 1만건 이상 게시 업체
2	파일마루	
3	예스파일	
4	온디스크	
5	케이디스크	
6	미투디스크	1차 모니터링기간 중 피해촬영물 발견 상위 업체

③ 악성 유통업체 유통실태 모니터링

a. 모니터링 과정

- 웹하드의 악성 유통업체 모니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음. 사이트별 성인 카테고리 전체 게시물 수를 탐색한 후,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토대로 피해촬영물을 발견함. 해당 업로더가 개인 계정(블로그 등)에 업로드한 성인 게시물 수를 탐색하고 2차 피해촬영물을 발견한 후, 모든 피해 촬영물에 대해 삭제요청 및 삭제요청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24) 1차 모니터링시 가장 많은 피해촬영물이 발견되었던 플랫폼은 온디스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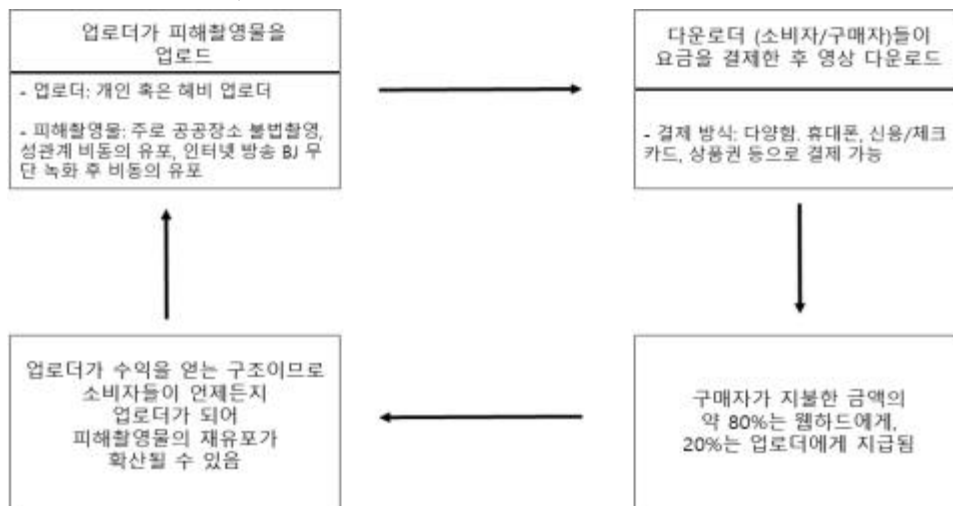
표 IV-14 웹하드 심층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단계	주요 내용
①	사이트별 성인 카테고리 전체 게시물 수 탐색
②	3개 주요 키워드 검색(몰래, 유출, 조건녀 등)
③	검색결과를 토대로, 피해촬영물 1차 발견
④	1차발견 피해촬영물 업로더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총 성인게시물 수 탐색
⑤	게시물 중 2차 피해촬영물 재발견
⑥	1, 2차 발견 피해촬영물 삭제요청
⑦	삭제결과 모니터링

b.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웹하드 업로드 절차 및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업로더가 피해촬영물을 업로드하면 이후 다운로더는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영상을 다운받음. 피해촬영물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더들의 구매비용의 80%는 웹하드 업자, 20%는 업로더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됨. 웹하드 업체와 업로더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웹하드는 피해영상물의 업로드만으로도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발생함.

그림 IV-4 웹하드 피해영상물 업로드 및 유통과정



④ 웹하드 주요 특성과 문제점

- 심층모니터링을 통해 웹하드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웹하드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피해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통해서는 안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유통을 방관하고 있음. 또한 삭제과정에서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면 다 삭제를 진행해주지만, 재유포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게시물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음.
- 웹하드에 등장한 불법 피해영상물의 변질도 중요한 요소임. 즉, 일반 콘텐츠(불법 피해촬영물)와 제휴 콘텐츠(피해촬영물이 해외에서 역수입되거나, 누군가가 피해촬영물에 저작권을 붙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피해촬영물들이 제휴 콘텐츠로 변질되고 있음. 이외에도 영상안에 성매매광고, 도박광고가 삽입되고 있으며, BJ 운영방식 등으로 변모되고 있음.

⑤ 웹하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촬영물을 유통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함
 - 피해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필요
 - 웹하드 사업자들의 불법정보 유통근절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강화 및 규제 필요
- ▶ 웹하드 관리자 규제강화를 위한 국내법적 제재 강화 및 폭력의 현장으로서 웹하드관리자 및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필요

4.2.2 포르노사이트

① 포르노사이트 심화 모니터링

- 포르노사이트는 국내법상 제작과 유통이 모두 불법인 콘텐츠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하는 플랫폼임. 포르노사이트의 유통 특징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을 ‘장르화’하여 유통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데 있음. 또한 입수한 피해촬영물을 자체 콘텐츠화 하여 다시 ‘제휴 콘텐츠’²⁵⁾로서 국내 웹하드

25) 저작권자와 협의를 마친 안전한 콘텐츠라는 뜻으로, 구매하면 업로더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됨.

플랫폼으로 역수출하며 부당한 이득을 누리기도 함.

표 IV-15 포르노사이트 심화 모니터링 과정

포르노사이트 특성 도출	166개 포르노사이트 ²⁶⁾ 분석 및 주요 특성 도출 ① 타산업 연계 : 웹하드 연계, 성매매·도박 등 불법산업 연계 사이트 ② 등급제 : 회원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는 사이트 ③ 유료제 :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	
타겟 모니터링	- 대상 : 주요 특성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 사이트 4개 - 방식 ① ‘한국야동’ 및 불법행위 암시 카테고리 내 피해촬영물 추정 게시물 수 ② 사이트 특성에 따른 유통구조 및 실태 파악 ③ 사이트 차단 신고

표 IV-16 포르노사이트의 주요 특성과 심화 모니터링 전략

포르노사이트 주요 특성	심화 모니터링 전략
피해촬영물로 구성된 ‘한국야동’ 카테고리가 공공연하게 존재함.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비윤리적으로 이루어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차단 비율 낮음.	▶ 포르노 사이트 운영의 특징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피해촬영물 신고와 병행하여 사이트 차단 신고를 실시함.

② 포르노사이트 모니터링

a. 모니터링 과정

- 포르노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차로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질적 조사 대상 사이트를 선정함. 사이트 선정 기준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년 진행한 포르노사이트 전수조사 리스트를 기초로, DNS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트 8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신규 사이트를 추가 검토함. 이후에 사이트별 특성파악을 통해 유형별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

2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8월 모니터링 기준

고, 사이트 내 불법행위를 암시하는 카테고리 게시물을 확인하고 삭제요청 및 완료여부를 검토함. 포르노사이트의 모니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음.

Ⅱ 표 IV-17 Ⅱ 포르노사이트 모니터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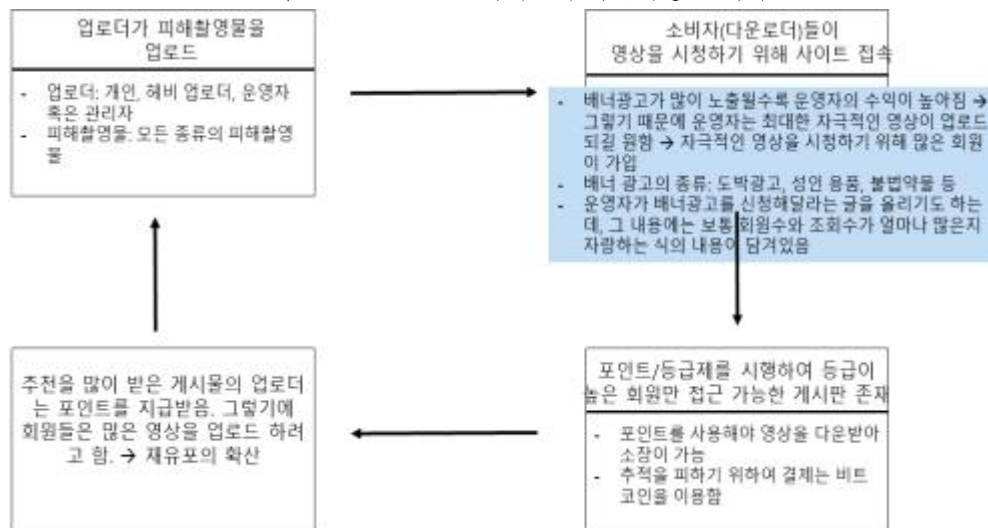
모니터링 단계	주요 내용
①	질적 조사 대상 사이트 선정 166개사이트 중 DNS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트 8개 + 신규사이트
②	사이트별 특성(타산업연계형, 등급제, 유료제)의 유형별 심층 모니터링
③	사이트 내 불법행위 암시 카테고리게시물 측정
④	카테고리 게시물 중 피해촬영물 탐색 후 삭제요청 및 완료여부 검토

b. 모니터링 결과

- 포르노사이트의 유통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업로더가 피해촬영물을 업로드하면 소비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고 해당 피해촬영물들에는 도박, 성인용품, 불법약물등의 배너광고가 삽입됨. 또한 포인트 및 등급제등을 통해 등급이 높은 회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회원간 추천제를 통해 추천을 많이 받은 자극적이고 배너광고가 높은 피해촬영물이 더욱 빨리 유통됨.

IV

Ⅲ 그림 IV-5 Ⅲ 포르노사이트의 유통과정 도식화



③ 포르노사이트 주요 특성과 문제점

- 심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포르노사이트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포인트제와 등급제를 통한 유인책을 통해 소비문화를 조장함. 예를 들면 출사²⁷⁾게시판 접근 권한을 강화하여 프리미엄 등급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함. 또한 피해촬영물 게시물을 클릭하면 직접 다운로드하기 링크를 통해 웹하드로 연결되는 구조를 조장하여 플랫폼간 불법촬영물의 유통구조를 강화함. 이외에도 사이트관리자가 직접 업로드하기도 하며 피해촬영물 원본이 텀블러인 경우가 있음.

④ 포르노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해외서버를 통해 국내법을 피해가는 포르노사이트의 전면 폐쇄 필요
- 웹하드, 성매매산업, 도박산업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텀블러를 원본, 웹하드를 연결하는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 ▶ 포르노사이트의 전면 폐쇄 및 포르노사이트 내 타산업과의 유통, 성매매등과의 유착, 불법 광고(약물, 도박 등)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면적 제재 필요

4.2.3 텀블러

① 텀블러 심화 모니터링

- 텀블러의 심화 모니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음. 1차 모니터링 시 발견한 주요 유통계정을 파악한 후, 피해촬영물 중 텀블러가 출처인 영상의 계정을 파악하고 계정 차단신고를 실시함.

27) ‘출장사진’의 줄임말.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여성 모델을 섭외하여 야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남성들을 모집함. 사진 및 영상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본 모니터링단이 발견한 것처럼 포르노사이트에서 고등급 회원을 위한 콘텐츠로 유통되고 있음. 다수의 남성 참가자들과 여성 모델 1인 구도에서 강압적인 촬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최근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을 통해 알려졌다.

표 IV-18 | 텀블러 심화 모니터링 과정

악성 계정 파악	① 1차 모니터링 시 발견한 피해촬영물의 주요 유통 계정 파악 ② 포르노사이트에서 발견한 피해촬영물 중 텀블러가 출처인 영상의 계정 파악
↓	
타겟 모니터링	- 대상 : 악성 계정 10개 - 방식 ① 악성 계정 활동 특징 파악 ② 계정 차단 신고

- 텀블러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게재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이며 최근 ‘제 2의 소라넷’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촬영물이 대거 게재되고 있음. 또한 미국 사업자로서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데다가 자체 차단 규정이나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이 다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에 비해 협조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표 IV-19 | 텀블러의 주요 특성 및 심화 모니터링 전략

텀블러 주요 특성	심화 모니터링 전략
계정 중심으로 피해촬영물이 유통됨. 신고 시 성인은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미성년자 유해 게시물로서만 신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도 거의 처리되지 않음	악성 계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피해촬영물 신고와 병행하여 계정 차단 신고를 실시함.

② 악성 계정 실태 모니터링

a. 모니터링 과정

- 텀블러의 모니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음. 1차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고한 텀블러 게시물을 업로드한 계정을 신고하고 게시물을 리블로그한 계정을 신고하며, 다른 플랫폼간 연결구조가 발견되는 소스의 출처를 확인 후, 신고 및 결과를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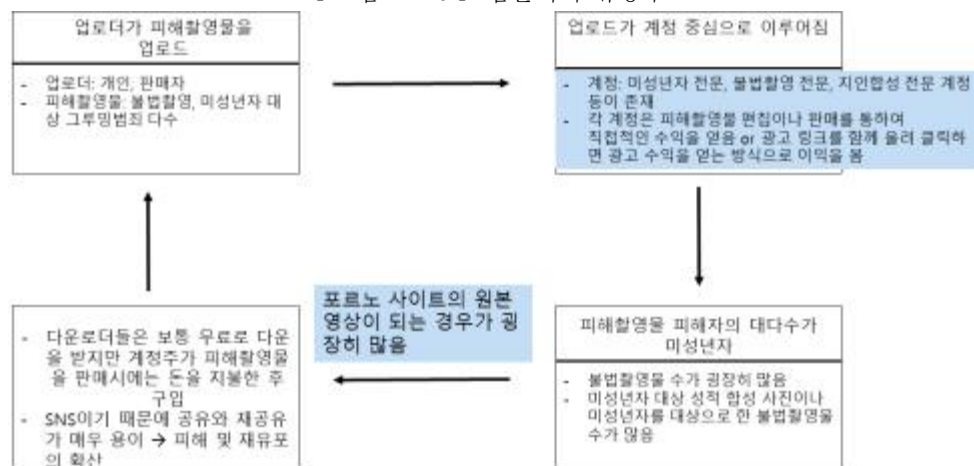
표 IV-20 | 텀블러 모니터링 과정

모니터링 단계	주요 내용
①	1차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고한 텀블러 게시물을 업로드한 계정 신고
②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리블로그한 계정에 접속하고 계정 신고
③	텀블러와 웹하드와 연결된 게시물, 원본소스 신고
④	악성 계정 및 게시물 신고 및 신고결과 확인

b. 모니터링 결과

- 텀블러의 모니터링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계정중심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면서, 각 계정이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해당 게시물을 웹하드와 포르노사이트로 유통하고 있음. 특히 텀블러의 주요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해 및 재유포가 강화되고 있으며, SNS의 특성상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불법피해 촬영영상물의 유포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림 IV-6 | 텀블러의 유통구조



③ 텀블러 주요 특성과 문제점

- 텀블러는 지인합성²⁸⁾ 등 촬영물을 합성, 편집해주고 이를 게시하는 전문 계정

28) 의뢰인이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함.

들이 존재함. 또한 악성 계정들은 무료로 의뢰인의 지인 사진에 편집, 합성을 제공해주면서 텀블러내의 피해촬영물 유통을 조장함. 다른 성폭력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는 특징도 존재함. 성매매업소, 불법약물, 성인사이트, 도촬그룹, 채팅어플등을 광고하기도 함. 또한 악성 계정 간 리블로그의 경우도 발생함.

④ 텀블러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SNS 상의 콘텐츠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인합성부터 성매매까지 연결됨
- 지인합성 등을 성폭력 행위로 여기지 않으며, 사이버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음.
- ▶ 사이버성폭력의 범위와 영역, 참여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다른 SNS와의 확대 적용방안 등도 고려 필요

V

정책적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정책적 시사점

■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 웹하드 사업자 규제

현행	제안
불법촬영·피해영상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없음.	개인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시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필요)
불법촬영물 발견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처벌되지는 않음.	▶ 불법촬영물 발견시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규정 강화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사업등록요건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발견, 삭제, 전송방지 혹은 중단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피해촬영물 추정 게시글 제목만으로도 피해촬영물 업로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악성 유통업체들은 피해촬영물 유통을 의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피해촬영물로 장르화·취향화하며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르노 산업과 연계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임. 국내 사법권 안에서 규제가 가능한 사업자인 웹하드에는 신고의무자제도 도입, 범죄수익 몰수 등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촬영물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촬영물 유통·이용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라는 인식을 조성해야 함.

■ 피해자 지원 확대 : 피해신고 요건 완화 및 법률·상담지원 확대

현행	제안
신고한 영상물에 대해서만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한 영상물 외에 발견되는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및 일괄 신고 기능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및 상담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예산 추가확보 필요 기존 상담소 내 사이버성폭력 상담활동가 및 영역 확보
미성년자 구비서류 요건 부모 동의 필수	부모 동의의 요건을 완화하고 선 삭제지원 필요 미성년자 제3자 및 부모동의요건 완화

-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경찰 등 피해지원 단위에서도 피해자의 영상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암수피해촬영물들을 발견하고 있을 것임. 각 단위가 시간과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본 모니터링 사업과 같은 방식의 피해촬영물 발굴·신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삭제지원을 진행 중 발견되는 피해촬영물들에 대한 일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피해자 지원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함.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디지털성범죄 특성을 감안한 성폭력상담소 설치 및 기존 성폭력상담소 상담영역 확대가 필요함. 또한,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 요건 완화가 필요함.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함. 본인이 삭제를 동의할 경우에 대리삭제 동의서를 본인이 제출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할 필요 있음.

■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 구축 : 디지털성범죄 통합 신고 온라인 플랫폼 마련

현행	제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발생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혹은 단체 통해 요청	『디지털성범죄 통합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된 기관, 경찰, 법률자문, 성폭력상담소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상의 다른 성폭력과의 연결 지점(성매매 등)을 논의하는 구조 부재	▶ 서울시 다시함께센터(온라인 성매매 모니터링) 및 I will(인터넷중독상담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연결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구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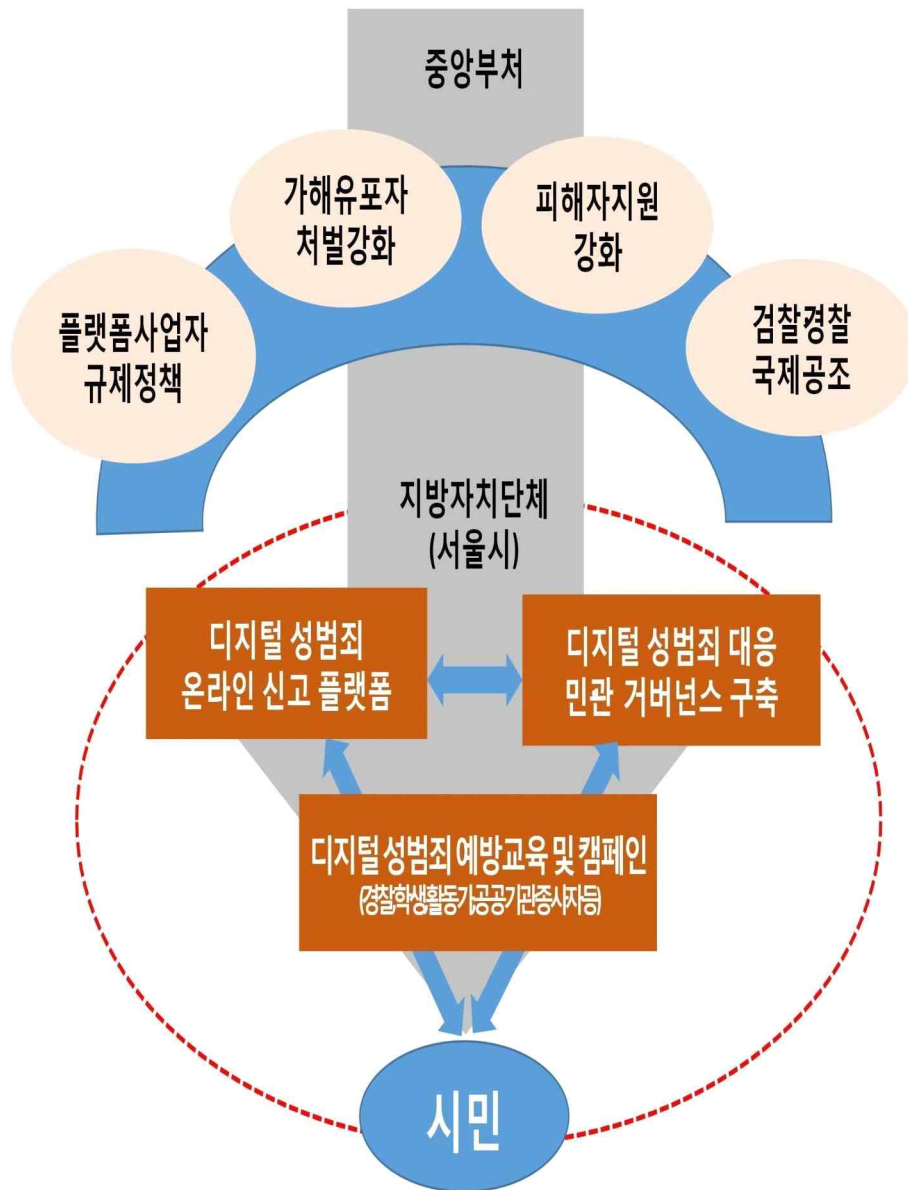
- 디지털성범죄 피해발생시, 현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 혹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적인 피해지원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피해자는 본인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착수 및 법률 등에 있어 어떠한 현황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통합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의 전 과정이 통합되어 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SNS상에서 지인합성 등의 사례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산하 성폭력피해 중간지원 조직 및 사이버공간 안전을 위한 조직들과 함께 논의하는 공동 대응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앙부처 및 입법·사법부 와 서울시의 유기적 협력·대응 거버넌스 구축

-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지리적 기반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공간을 초월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유포된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및 서울시 단위 차원에서 유기적이며 협력적인 대응이 요구됨.
- 먼저 중앙부처 및 입법·사법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한정되어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치료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의 협력적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또한 경찰을 포함한 사법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강화와 더불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상업화된 플랫폼에서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의 국내·외적 유통이 근절되도록 해야함.
- 이러한 기반하에 서울시는 성매매근절 및 온라인 중독 관련 중간지원조직(아이월센터, 다시함께센터 등) 및 성폭력상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경찰·학생·공공기관·시민대상의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공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을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간’으로 선도하고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임.



■ 그림 V-1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모형(안)



>>> 참고문헌

- 김은경 외(2000). 신종 성폭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아(2016).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 9권 제 2호
- 배상균(2016).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7(1), 199-227.
- 서울시·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시
- 윤상민. (2017). 일본의 ‘리벤지 포르노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법학연구 제 17권. 제 4호(통권 86호) 199~222.
- 한국성폭력상담소(2018). 긴급토론회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정치』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 2018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체 구축 사업 보고서. 서울:
- 최 란(2017).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성폭력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VOL 11, 56~85.
- Hall, Matthew, & Hearn, Jeff. (2018). Revenge Pornography - Gender, Sexualities and Motivations. NY: Routledge.
- Henry, Nicola & Powell, Anastasia & Flynn, Asher & Gendered Violence and Abuse Research Alliance & RMIT University. Centre for Global Research et al. (2017). Not just ‘revenge pornography’: Australians’ experiences of image-based abuse: a summary report. RMIT University, Melbourne. eSafety Office Research.
- 平沢勝榮, 三原じゅん子, 山下貴司 (編著). (2016). よくわかるリベンジポルノ防止法. 東京: 立花書房
- <https://www.esafety.gov.au>
- <https://www.cybercivilrights.org>
- <https://kidshelpline.com.au/>
- <https://www.cybertip.ca>
- <https://protectkidsonline.ca>
- <http://www.zoeandmolly.ca>
- <https://www.protectchildren.ca>
- <http://www.teatreteells.ca>
- <http://www.smartstrongsafe.ca>

<https://needhelpnow.ca/app/en/>

<http://www.spo.go.kr/>

부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안전하고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조성’을 위한 온라인 카드뉴스

1편. “모니터링이 필요해”



3편. “포르노사이트 대놓고 폭력, 대놓고 불법”



4편. “디지털성범죄 전문계정이 득실득실, 텀블러”



5편. “폭력을 멈추는 클릭, 함께해주세요”

2022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폭력을 멈추는 클릭,
함께해주세요**

홍익대학교 경찰학부

다지털성범죄예방교육은 8월부터 지금까지
40개 캠퍼드 사이트, 166개 포럼노사이트, 40개
캠퍼드 개월을 실시해왔습니다.

캠퍼드 **40개**
포럼노사이트 **166개**
캠퍼드 개월 **40개**

캠퍼드 : 과다사용자(악성) 행위,
피해정보를 다른 공유

포럼노사이트 : 피해정보를 원시(원시) 원시하고
있고, 삭제(삭제) 불가능

캠퍼드 : 피해정보를 원시(원시) 원시하고
있고, 삭제(삭제) 불가능

과, 불행(불행) 피해(피해) 피해(피해) 피해(피해)
유동(유동) 유동(유동) 유동(유동) 유동(유동)
폐쇄(폐쇄) 하고, 닫지 않습니다.

1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무엇(무엇)

2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3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불(불)

4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당신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보고서

- 2018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발행처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수행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사업책임 :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임경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강효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임)

■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박정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삭제팀장) 외 8명

발행일 2018년 12월

인쇄처 ㈜행복드림

발간번호 51-61110000-001988-01

ISBN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